

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253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6월 23일
제안자 : 운 영 위 원 장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‘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(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에게 제출한 날)까지로 한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포함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- ‘서울특별시의회’(이하 “시의회”)와 ‘서울특별시’(이하 “시”) 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, 「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」 을 체결한 바 있음(2015.8.17).

- 동 협약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,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며,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임사장 임용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사장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‘서울 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 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타 사항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- 지난 2015년 8월 17일, ‘서울특별시의회’와 ‘서울특별시’는 시 산하 지방 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, 「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」(이하 “협약”)을 체결한 바 있음.
- 동 협약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,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며,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용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‘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.

2021. 06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

<별첨>

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 일반현황

1 설립목적 :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, 개량,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

2 사업범위

- 토지의 취득, 개발, 비축,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
-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, 개량,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 및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, 개량, 공급 및 관리
- 각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, 도시개발사업, 역세권개발사업, 도시재생사업, 산업단지 개발, 재생사업 및 관리업무,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, 재정비촉진사업, 관광지 등의 개발, 운영 및 관리, 부동산 개발업
-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
-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- 주거복지사업,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건설사업,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사업 등

3 주요연혁

- 1988.12 : 『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』 제정
- 1989.02 :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설립(자본금 3천억원, 정원 389명)
- 1990.03 : 사옥 이전(중구 정동 ⇒ 성동구 성수1가동)
- 1998.12 : 사옥 이전(⇒ 강남구 개포동 現사옥)
- 2004.03 : 사명 변경(⇒ 서울특별시 SH공사)
- 2016.09 : 사명 변경(⇒ 서울주택도시공사)
- 2018.01 : 제14대 김세용 사장 취임
- 2018.03 : 직제개편(6본부, 5실, 1원, 16처, 1단, 64부, 12센터)
- 2019.03 : 직제개편(7본부 6실 2원 26처 87부 14센터)
- 2021.03 : 직제개편(7본부 6실 2원 27처 89부 14센터)

4 자본금

(2021. 5. 31. 기준)

- 수권자본금 : 8조원
- 납입자본금 : 6조 7,871억원 (현금출자 4조 8,667억원, 현물출자 1조 9,205억원)

5 인력현황 : 1,386명(정원) / 1,358명(현원) (-28)

(2021. 5. 31. 기준)

정원/현원	임원	1급	2급	3~6급 외	전문직	주거복지직
1,386/1,358 (-28)	5/4 (-1)	20/20 (-)	69/69 (-)	813/805 (-8)	73/67 (-6)	406/393 (-13)

※ 정원외 정수 (159명/146명) 별도

※ '3~6급외'는 육아휴직,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이 포함된 현원임.

6 조직도 : 사장, 감사, 7본부, 6실 2원 27처, 89부 14센터(*한시조직 1단 별도)

